

Wafer 임가공 기본계약

<u>주식회사 아이피에스</u> (이하 " 갑'이라 함)와 <u>주식회사 에스엠텍</u> (이하 " 을'이라함)은 Wafer 임가공 거래에 관한 기본 계약 (이하 " 본 계약 이라 함)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기본원칙)

"갑 과 "을'은 계속적인 임가공 거래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도급거래 질서확립 및 안정된 Wafer 임가공과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작성하며, 본 계약에 규정한 내용은 별도의 특별약정이 없는 한 "갑", "을'간의 모든 개별거래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2조 (개별계약의 성립)

1. " 갑 은 자신이 의뢰할 임가공 Wafer(이하 "계약물품" 이라 함)의 품명, 사양, 수량 및 기타 사항이 기재된 임가공 의뢰서 등의 문서(' 갑 의 사양서, 도면 및 " 을'의 사양서, 도면 등을 포함한다. 이하 " 발주서'라 함)를 " 을 에게 전달하여 계약물품에 대한 거래신청을 한다. " 을'이 " 갑'의 발주서를 수령한 후 5일 이내에 " 갑 에게 수락거부의 회신을 하지 않는 한 동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계약물품 및 단가)

- 1. 본 계약에 의거 "을"이 "갑"에게 공급하는 서비스는 "갑"의 요구로 "을 이 "갑"에게 제출하는 견적서 및 그의 부수문서에 기초하여 "갑", "을"간의 합의로써 결정된다.
- 2. 전항의 가격은 개별계약서에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 갑'이 지정하는 납품장소까지의 포장비, 운임, 하역비 및 보험료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3. 단가에는 순수 가공 경비 외에 "을"의 기존제품 생산 지연에 대한 손실부분을 포함하며, 공정 전후 발생 할 수 있는 오염 혹은 제반 문제에 대한 보상 부분은 제 9조 항에 따른다.

제4조 (납품 및 수입검사)

- 1. "을'은 거래명세표, 및 "갑'이 요청하는 기타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2. "걉은 기 입고된 물품에 대하여 내부의 규정에 따라 "을"이 납품한 계약물품에 대해 수입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5조 (소유권의 이전)





납입된 계약물품의 소유권은 "갑'의 수입검사 결과 합격판정을 받고 "갑'이 "을"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 시점에서 "을"로부터 "갑'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갑'은 검사전의 납품된 계약 물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 관리한다.

제6조 (대금지불)

1. 납품대금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 그 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품질보증 및 검사)

1. 품질보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은 양 사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서비스 보증)

"갑은 "을"이 공급한 계약물품에 대해 애프터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을"에게 별도의 서비스제공 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 9조 (공정 중 문제 발생시의 책임)

"을 이 납품을 위하여 작업하는 물품에 의한 공정오염이나 기타 "을 의 기존 공정에 여타의 피해를 초래 하였을 경우 "갑"은 "을"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가지며, 다음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단 "을"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가지지 않는다..

- "갭의 제품 (Wafer)을 공정에 투입 시 발생하는 오염 사고 유형으로 TiN 같은 metal film wafer의 가공 후 발생 될 가능성이 있는 당사 정규 공정 제품의 metal contamination.
- 상기의 오염이나 기타 문제발생의 요인으로 판단되는 유형의 공정 problem. Cleaning bath나 part 종류, 특히 wafer와의 직접적인 영향이 유발되는 경우; metal (특히 Ti) level이 당사의 관리치 5e10 atoms/cm2을 벗어나는 경우.
- 상기의 문제 발생으로 인한 장비 상의 피해 □ 3시간 이상의 장비 down 요인이 발생 되었을 경우. 오염으로 인하여 장비를 cleaning하는 시간이 이에 포함된다.
- Wafer 상의 피해일 경우에는 해당 lot의 수량을 고려하여 양사간 협의하여 처리한다.

"을 이 납품을 위하여 작업하는 "갑'의 의뢰 물품(웨이퍼)를 손상시켰을 경우, 즉, 웨이퍼의 깨짐이나 긁힘 등에 의한 웨이퍼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이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을"은 "갑"에게 배상 책임을 진다.

피해배상은 해당 웨이퍼의 수량을 고려하여 양사간 협의하여 처리하며, 남은 정상 웨이퍼가 재 작업을 요구할 경우 " 갑"은 재 작업을 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0조 (납기준수)

"을"은 제2조에 따른 발주서상의 납기를 준수해야 하며"을"이 납기를 지여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갑'에게 발생한 손실발생비용, 대고객 지체보상금, 기회손실비용 등 제 손해에 대하여 "갑', "을"이 사전에 합의한 산출근거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며, 손해배상청구 접수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갑', "을"간에 협의된 방법에 의하여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실비용은 직접부문의 비가동 시간에 대한 손실비용을 적용하며, "갑'의 귀책사유, 문서에 의한 사전합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비밀준수의 의무)

"갑과 "을"은 거래에 의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기밀(사양서, 기타 제지식)을 사전서면에 의한 상대방의 승인을 얻지 않는 한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 후 5년 동안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본 조에 의한 비밀준수의무는 "갑"과 "을"이 상대방에게 공개한 기밀 중 서면으로 제공되고 "대외비" 표시를 한 기밀에 한하여 적용된다.

제12조 (지적소유권 침해금지)

- 1. "을 은 " 갑 의 소유로 되어있는 지적소유권(특허권, 실용 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을 " 갑 의 계약물품을 제조 납품하는 목적이외에는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도 사용할 수 없다.
- 2. "을'은 계약물품을 임가공하여 납품함에 있어서 제품 및 제조방법에 대한 국·내외 제3자의 지적소유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13조 (지도 및 협력)

" 걥 은 필요에 따라 " 을"에 대하여 수시로 작업현장에 출장하여 이를 확인하고 검사할 수 있으며, " 을"은 적극 협력할 의무를 진다.

제14조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에 대한 협력)

" 갑 은 계약물품에 관련하여 " *을*"의 공장설비, 생산관리, 품질보증 등의 실태를 조사 할 수 있다.

제15조 (계약해지)

- 1. 일방 당사자는 타방당사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당사자는 별도의 통지없이 즉시 "갑", "을"간의 제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1) 쌍방에서 공정상의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일시적 문제라도 그 발생 빈도가 빈번 한 경우.
 - 2) 쌍방 중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이 도저히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3) 일방당사자가 해산,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 회사로 합병될 경우.
- 2. 일방당사자는 전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3. 일방당사자는 본 조 제 1항에 의하여 해제 또는 해지 되었을 때는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절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변제하여야 한다.

제16조 (손해배상)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자신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조항 및 개별계약의 조항을 위반 함으로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 시켰을 때 그 손해를 입힌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직접 실질적 손해 전부에 대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제출의무-" 갑"의 요청시)

"을'은 "갑 과 본 계약 체결 할 때 또는 "갑의 업무상 필요로 한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업체실태 조사서 (" 갑"의 양식): 1 부
- 2) 결산보고서: 1부
- 3) 납세완납 증명서: 1부
- 4)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6)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1부

제18조 (계약유효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 일로부터 <u>~ 004</u> 년 <u>4</u>월 <u>30</u>일 까지로 한다. 다만, 기간만료 3개월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서명통보가 없을 때는 본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보며, 그 이후도 동일하다. 단, 최장연장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19조 (기 타)

-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계약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는 "갑",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 2. "걥, "을'간의 계약에 수반된 분쟁은 서울지방법원 본원 또는 "을'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합의관할로 한다.

상기와 같이 약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Wafer 임가공 기본계약서 2통을 작성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02년 5월 /일

공급받는자("갑")

주 소: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33

업체명 : 주식회사 아이피에스

대표자 : 이 용 한

공급하는자("을")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358-25

업체명 : 주식회사 에스엠텍

대표자 : 윤 배 원



